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. 7. 20 선고 2021가단115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상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6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0. 6. 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0. 6.

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,283,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,283,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원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도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으나,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), 갑 제3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6,117,238원인 사실,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의 가액은 10,875,600원으로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기범

별지